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공제사업 신규추진 안내

♠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공제 사업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감 및 기타 민원서류 발급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공제사업으로 보상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 수행 환경조성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가 추진하는 신규 공제사업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 1)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3)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 4)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 5)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 6) 위의 2), 3)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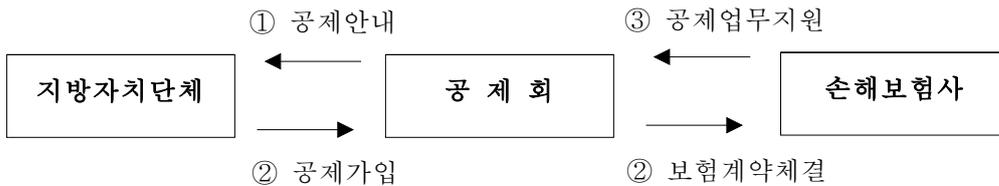
♠ 공제등록 방법 및 기간

- 공제등록 신청서(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후 본회에 공문발송
- 정기등록
 - 등록신청서(본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20일까지 신청
 -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비납부는 매년 3월말일까지 납부

○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본회 소정양식)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
- 등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운영구도(안)>



♠ 공제회비

- 기본요율 : 40,900원
- 조정계수 : 할인·할증율
 - 자치단체별로 과거의 손해율에 따라 소정의 할인을 (13%~40%), 할증율 (5%~100%)을 적용
- 특별할인 : 5% ~ 15%
- 공제회비 산출 = 기본요율 X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X 조정계수 X 특별할인
- 인상계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1청구당 보상한도액				
	50	100	200	300	
연간총보상한도액	100	1.00	1.87		
	200	1.14	2.07	3.52	
	300	1.25	2.27	3.81	4.94
	400		2.46	4.08	5.15
	500		2.64	4.33	5.34
	750			4.56	5.50
	1000			4.77	5.63
	1500				5.73

※ 기타 자세한 자료 검색방법은 본회 홈페이지 → 정보서비스 → 공제사업관련교육자료의 지방자치단체업무배상공제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